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5. 30 선고 2022가단2006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개명전 성명: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두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나광엽, 김민국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21. 4. 29.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5. 3. 접수 제99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11. 9. 사망하였다. E은 망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원고는 E과 망인 사이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G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원고이다.

다. G 주식회사는 2021. 1. 8. 원고의 계좌로 망인의 사망보험금 118,075,510원을 지급하였고, E은 2021. 1. 12. 원고의 위 계좌에서 118,000,00원을 출금하였다.

라.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은 2021. 1. 11. E에 대하여 2021. 3. 10.까지 원고에 대한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행사의 정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하였고(2021동거1), 위 임시조치결정은 2021. 1. 22. E에게 송달되었으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1. 3. 9. E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원고에 대한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행사의 정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였다(2021동처5).

마. H는 2021. 4. 21.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2021느단1016호로 E을 상대방으로 하여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 7. ‘E은 원고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원고의 미성년후견인으로 C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18907호로 E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한 망인의 사망보험금 118,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 8. 31. ‘E은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E은 2021. 4.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4호증, 을 제4, 6, 8,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한 사실, E에 대하여 2021. 1. 11. 원고에 대한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행사가 2021. 3. 10.까지 정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이 있었고, 2021. 3. 9.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시까지 다시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행사를 정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이 이루어진 사실, H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21. 4. 21. E을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였고, 2022. 1. 7. E의 원고에 대한 친권이 상실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I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취소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E이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E에 대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E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보험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E은 이 사건 부동산 및 J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E이 무자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으며, E은 생활비와 치료비가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3,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E은 뇌경막하출혈에 따른 장애로 신경계, 정신행동의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의 이용, 장보기 등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E의 형으로서 피고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어 온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 후 망인과의 재산관계 정리를 위한 소송 등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E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치료비 및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필요해서 매수하였다거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미 E의 J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음에도 그 집행에 나아가지 않고 E과 피고에게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려면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통한 원고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주관적으로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에 있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해남군

동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1층 549.62㎡

2층 525.12㎡

3층 525.1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65.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해남군

대 1162㎡

2. 동

소

대 1373㎡

대지권의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45분의 1

끝.

